

안산시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0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·시행(07. 5.11)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

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“제19조제6항” 을 “제26조제6항”로 변경하여 규정함(안 제3조제2항).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“제19조제6항” 을 “제26조제6항 후단”으로 변경하여 규정함(안 제7조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 : 입법예고 생략

-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및 「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지방의회”를 “시의회”로 하고, 같은조제2항 중 “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6조제6항”으로, “지방의회 의장”을 “시의회의장”으로, “지방의회”를 “시의회”로, “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”을 “법 제26조제6항”으로, “지방의회 장”을 “시의회의장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지방의회”를 “시의회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지방의회의 장”을 “시의회의장”으로, “지방의회”를 “시의회의”로, “표지”를 “표시”로 한다.

제7조 단서 중 “제19조제6항”을 “제26조제6항 후단”으로, “지방의회의 의장”을 “시의회의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 중 “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”를 “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기획예산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기획 예산과장 김 진 근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법무 담당 김 학 창
	담당자 성명·전화	장 봉 순 (481-2812)

신 · 구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조례) ①조례의 전문에는 <u>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.</u></p> <p>②<u>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</u>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<u>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</u>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, <u>지방의회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.</u></p>	<p>제3조(조례) ①-----<u>시의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「<u>지방자치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6조 제6항-----<u>시의회의장</u>-----</p> <p>-----<u>시의회</u>-----</p> <p>-----<u>법 제26조제6항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시의회의장</u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5조(예산등) 예산(예산외 의무부담을 포함 한다)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<u>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.</u></p>	<p>제5조(예산등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시의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6조(번호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<u>지방의회의 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되어,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6조(번호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<u>시의회의장</u>-----</p> <p><u>시의회의</u>-----</p> <p>-----<u>표시</u>-----</p>
<p>제7조(공포방법) 조례·규칙 등은 시보에의 게재로서 한다. 다만,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 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.</u></p>	<p>제7조(공포방법) -----</p> <p>-----<u>제26조제6항 후단</u>-----</p> <p>-----<u>시의회의장</u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8조의2(주민의 권리보호)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·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<u>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8조의2(주민의 권리보호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공포한 날부터</u></p> <p><u>30일이 경과한 날</u>-----</p> <p>-----</p>